

인천광역시검단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2 호

2026. 7. 6.(월)

선	기관장
람	

차 례

고 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1

공 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1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3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1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승계·지정 공고
———— 6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7. 1.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고시명 :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근거 :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3. 지정대상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10m이내	택시정류소 경계로부터 10m이내	주유소	광장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의료기관 출입구 10m이내	횡단보도 경계로부터 5m이내
390	6	17	0	74	81	33	257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횡단보도

4. 지정범위

-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와 그 경계로부터 10m 이내
- 주유소
- 광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지하철 ·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 향후 지정구역 신설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지 시 금연구역을 자동 해제함.

5. 지정현황 : 인천광역시 검단구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6.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7. 고시방법 :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6. 7. 6.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모집인원: ○○명
2. 모집분야: 총 9개 분야
 -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3. 위촉기간: 2026. 8. 1. ~ 2028. 7. 31. (위촉일로부터 2년)
4. 기 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이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단,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는 강사급 이상)

- 나. 모집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다. 모집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건축사로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라. 모집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 기술자
-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 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 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5년 이상 경력자
- 사. 해당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아. 그 밖에 모집 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6. 제출 서류

- 가. 공개 모집 지원서 및 이력카드 1부.
- 나.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 공개모집 지원서 및 이력카드: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7. 모집 기간 및 접수처

- 가. 접수기간: 2026. 7. 6. ~ 7. 20.까지 (15일간)
- 나. 접 수 처: 검단구청 도시계획과(3층)
-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전자우편(e-mail) 접수 가능
 - 주 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당하동)
3층 도시계획과(우 23543)
 - 이 메 일: chello83@korea.kr
-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지원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 및 전자우편(e-mail)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8. 심사 및 통지: 자체심사 후 위촉 대상자 개별 통지

9. 기타 참고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구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 라. 위원회 명단이 우리 구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마.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구청 도시계획과(☎032-726-713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승계·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검단구(신설구) 금고 승계·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이호성]

2. 약정기간 : 2026. 7. 1. ~ 2026. 12. 31. (6개월)

3.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4. 구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보관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 등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 일상경비 등 배정자금 및 유가증권,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 업무의 취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정한 업무

5. 약정 이자율

○ 예금 금리

구 분	금리(연 %)	비 고
공금예금	2.40%	
정기예금	- 1개월~3개월 미만 : COFIX+1.04% - 3개월~6개월 미만 : COFIX+1.30% - 6개월~1년 미만 : COFIX+1.63% - 1년 이상 : COFIX+1.98%	※ 정기예금 기준금리: 매달 은행연합회 공시 COFIX(잔액기준) 금리
수시입출금 (MMDA)	기업MMDA(잔액기준) + 1.64%	※ MMDA 기준금리: 매달 한국은행 공시 기업 MMDA(잔액기준) 금리

○ 대출(차입) 금리

구 분	금리(연 %)	비 고
일시차입	91일물 CD유통수익률 + 1.09%	
지 방 채	-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국고채(5년물) + 1.09%	국고채 유통 수익률+ α